

문 서 번 호 : 2016-003 2016.05.30
 시 행 일 자 : 2016.05.30
 수 신 : 인천시 장애인복지과
 참 조 : 특별공급 담당자
 제 목 :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협조 요청의 건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에서 건설하는 경기도 화성시 「힐스테이트 동탄」의 특별공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」에 따라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명단 송부 요청드립니다.

- 아 래 -

구 분	예정사항
분양 승인	2016.06.16.(목)
특별공급 일정	청 약 접 수 : 2016.06.21.(화), 10:00~14:00 당첨자 선정 : 2016.06.21.(화), 17:00
동호수 배정	동호수 발표 : 2016.06.29.(수)
장 소	우. 445-811,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-1번지 힐스테이트 동탄 견본주택 ☎1877-5510

※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/대표번호 문의바랍니다.
 ※ 특별공급 신청 대상 세대 및 필요서류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힐스테이트 동탄 분양사무소 (직인생략)

<별첨 #01. 특별공급 안내문>

힐스테이트 동탄
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1. 공급개요 및 배정기준

■ 공급위치

경기도 화성시 동탄(2)택지개발지구 A42블록

■ 공급규모

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2층, 지상15~33층 16개동 총 1,479세대 중 일반공급 1,479세대 및 부대시설

■ 기관 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

주택형	61	74A	74B	74C	84A	84B	소계
공급세대	15	14	7	7	96	8	147

※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■ 대상자별 배정기준

대상자	배정기준	비고
국가유공자, 장애인, 중소기업근로자, 군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	85㎡이하 주택건설량 10%범위	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

2.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■ 대상자 자격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자,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 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(단, 이주대책 대상자 중 1군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와 상관없음)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■ 유의사항

-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각각 신청,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(당첨자 명단관리, 계약체결 불가,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) 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.
- “무주택세대 구성원”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4호)
 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 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‘가’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: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
 - 상기 ‘공급신청자격자’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,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.
 -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.
-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 형제·자매·장인·장모·시아버지·시어머니·며느리·사위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·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음.
-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

-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
-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
-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.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.
-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.
-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.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(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제외)
-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. (신청자, 배우자,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,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며,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,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
3. 특별공급 일정 및 방법

■ 공급일정

신청일자	당첨자 발표	동호수 배정	계약체결	장소
2016.06.21.(화) 10:00~14:00	2016.06.21.(화) 17:00	2016.06.29.(수)	2016.07.04.(월) ~ 2016.07.06.(수)	당사 건본주택

- ※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기 바람
- ※ 당첨자 선정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은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
- ※ 당첨 동호수 확인 방법 :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www.ap2you.com)

■ 당선자 선정방법

-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.(장애인 기관추천일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포함)
- 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 불가함

■ 당선자 선정 유의사항

-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.
 -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, 동·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. (동·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)
 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·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(전산관리지정기관)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·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.
 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.
 -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.
- 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.

4. 특별공급 서류 및 견본위치

■ 구비서류 안내

- 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'16년 6월 16일 예정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성명 및 관계"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기 바람.
- ※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 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함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/무주택서약서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. •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본인서명 사실확인서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
	○		주민등록등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
		○	주민등록초본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•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·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될 경우 제출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-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
	○	청약통장 가입(순위)확인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결제원(APT2you) 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• 철거주택 소유자,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, 장애인 제외 (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) 	
일반 (기관추천) 특별공급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추천한 추천명단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(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)만 인정함 • 국가유공자는 보존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
제3자 대리인 신청시		○	위임장	청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리신청서(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) - 위임장은 접수장소에 비치 • 본인(신청자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)
		○	인감도장	청약자	•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	○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	○	신분증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		○	도장	대리인	

■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사항



홈페이지 : <http://www.hillstate.co.kr>

견본주택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-1

문의전화 : 1877-5510

<별첨 #02. 힐스테이트 동탄 참고자료>

■ 조감도



■ 단지배치도



※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